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7. 10. 24. 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10. 2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 김정수)

가. 제안이유

○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설립·운 영과 그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설립·운영과 운영의 위탁 근거 신설
 -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·운영 규정 (안 제8조의2제1항)
 -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운영 근거 마련(안 제8조의2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 학생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설립·운영과 그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.

○ 주요 개정 내용으로

- 안 제8조의2제1항을 신설하여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의2제2항을 신설, 안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- 2017년 3월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운영되는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은 총 38개 기관이 있으며 전통적·획일적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중단 방지와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.
- 현재 우리구에서는 "꿈더하기 학교"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받아 일반 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하여 직업교육 및 대안교육을 실시하 고 있음.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, 전문화된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**274** 호 제출연월일 : 2017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우리 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설립·운영과 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설립 · 운영과 운영의 위탁근거 신설(안 제8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장애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· 성별영향분석평가 ·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9.7. ~ 9.27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·운영 등)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、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제8조의2(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
	립·운영 등)
	① 구청장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
	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대안교육
	위탁교육기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	② 구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
	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
	있다.